송도국제도시 호반베르디움 3차 EDU CITY 입주자모집공고

VERTIUM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의 기재사항이 오류가 있을 시에는 정정하여 무효처리 우선합니다.

- 본 분양주택은 주택청약에는 개별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관한 규칙」 개정(2016.11.15.시행 2017.1.1.)이 적용되오니, 이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해 주시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별 가산점 및 청약통장 순위별 청약 요건 변화 : 기존 1, 2, 3순위 방식을 → 1순위 방식으로 간소화 / 순위별 가산점 기존 2년 24회 납입 → 기년 12회 납입으로 변경
  - 특별공급 청약자격 완화 : 기존 '무주택세대주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도 신청가능(1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 가능 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필수 적용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및 납입 방법 : 예치금액 이외에 해당되는 분양가 / 주택규모별 기준금액 및 주택규모 상향시 청약제한기간(3개월) 폐지
  -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시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주택소유 수에 따른 감점 폐지
  - 노첨 차지주택 기준 완화 : 기존 '60㎡이하 공시가격 2천만원 이하에서 → '100㎡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6천만원 이하'로 변경
- 본 공동주택(아파트)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시어 인터넷청약 기일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인접한 지역 및 경기도 일부 지역 거주자 및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청약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들은 청약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은 「주택법」 제3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에 의거 "분양소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되는 주택이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분양소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되는 주택이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은 「주택법」 제3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에 의거 "분양소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되는 주택이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분양소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되는 주택이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월평균소득의 연간소득 ÷ 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기본)'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상의 과세대상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천징 과세대상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천징 과세대상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월평균소득은 100원미만 절사 하여 산정하며 월평균소득이 기준소득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청약신청 가능하며 월평균소득이 기준소득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약신청 불가능하며 이때 월평균소득은 100원 단위 절사 하여 산정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되며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세한 세대별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을 말하며 이때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다 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상